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7461호, 2020. 6. 9. 공포)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등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을 정하고, 생체정보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제6조 제1항부터 제3항 신설)

- 1)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방법을 제시함
 1.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법
 2. 승객등의 고유식별정보와 승객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 2)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전송방법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나. 생체정보의 보호(제7조 제1항부터 제4항 신설)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 이용내역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함

다. 공항운영자 등의 생체정보 파기 시점 및 방법(제8조 제1항부터 제2항 신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등의 생체정보를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람이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한 후, 탑승하거나 탑승하려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후, 탑승권을 발급받은 자가 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 후, 즉시 파기하고, 파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조 라목) 및 목 조정

법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행정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재입법예고 추진 예정(2024. 3. 27. ~ 4. 11.)

3) 행정규제 : 없음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법
2.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유식별정보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일치 여부를 회신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전송방법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생체정보의 보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등의 생체정

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 운영자등에게 생체정보 이용 및 파기 현황을 포함한 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생체정보의 파기)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도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체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1.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람이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2.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한 후
3. 탑승하거나 탑승하려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후
4. 탑승권을 발급받은 자가 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 후

② 제1항의 생체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별표 제2조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목을 조정한다.

라. 법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 제1항제3조의2	500	750	1,000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4호	500	750	1,000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5호	500	750	1,000
사.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5호의2	500	500	500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6호	500	750	1,000
자. 법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법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에 따른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위반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6호의2	500	750	1,000
차.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법 제51조제1항제7호	500	750	1,000
카.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9호	1,000	1,000	1,000
파.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0호	1,000	1,000	1,000
하.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11호	1,000	1,000	1,000
거.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1조제2항제1호	250	400	500
너.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250	400	500

<p>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p>	<p>법 제51조제2항제3호</p>	<p>250</p>	<p>400</p>	<p>500</p>
<p>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않은 경우</p>	<p>법 제51조제3항</p>	<p>50</p>	<p>75</p>	<p>100</p>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①</u> <u>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u></p> <p>1. <u>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여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법</u></p> <p>2. <u>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u></p>

<신 설>

고유식별정보와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체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전송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일치 여부를 회신 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전송방법 등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생체정보의 보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공항운영자 등의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등에게 생체정보 이용 및 파기 현황을 포함한 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 설>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생체정보의 파기) ① 공항 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도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체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1.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사람이 보호구역에서 나온 후
2.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이륙한 후
3. 탑승하거나 탑승하려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후
4. 탑승권을 발급받은 자가 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한 사실을 항공운송사업자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한 후

② 제1항의 생체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39